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76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더파이널스대부

2. 조치내용

○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위반에 대하여 영업 전부정지 6월 조치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1.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위반

○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됨에도

- ㈜더파이널스대부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(20xx년 11.4배, 20xx년 10.1배)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○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, 제13조 제1항

○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4, 제7조의4 제1항